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지털복지기금 부담금 신설〉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3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 신설 (안 별표)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의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됨에 따라, 콘텐츠·플랫폼 위주의 ICT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의무 제도로부터 분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회선 요금뿐만 아니라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함. 아울러 ICT 생태계의 환경 변화와 감면 범위의 확대 및 그에 따라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감안하여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기금의 분담금을 징수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 신설(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신설>	○ 별표(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

부담금은 현행법 제3조¹⁾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담금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의 보편적 의무(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의무) 제공 의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는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콘텐츠·플랫폼 위주의 ICT 생태계 재편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통신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의 분담금(이하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이라 함) 설치 근거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의2(디지털복지기금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분담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신설)을 설치하고, 전기통신사업자²⁾로부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하여 동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만 부담³⁾하고 있는 요금감면 조항의 취지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등 공적 의무 이행 주체에 부가통신사업자⁴⁾를 포함하고, 전체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안) 개요]

-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지원
- (부과·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부과대상)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 (귀속) 디지털복지기금(신설)
- (부과요율(한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4) 영상·음원·도서 등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유통사업자

[디지털복지기금(신설) 개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 분	내 용
기금의 설치 (안 제29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복지기금 설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금의 재원 (안 제29조의2 제2항)	1. 제3항에 따른 분담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안 제29조의2 제4항)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⁵⁾ 등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인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 전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삭제

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발전, 플랫폼 중심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해 플랫폼과 포털,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등 콘텐츠·플랫폼 위주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보편적 의무도 단순히 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이 확장될 필요가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담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콘텐츠·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모든 부분의 손실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부가통신사업자도 이러한 부담을 일부 분담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등 공적 의무 이행 주체에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어 보임.

다만, 부담금은 국민에게 납세의무 외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므로, 부담금을 도입하려는 경우도 도입 여부가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⁷⁾에서는 무분별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증설을 억제하기

6)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하여 정부에서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①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②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③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④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 ⑥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 필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담금 신설 목적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설 목적이 명확한 것으로 보임.

둘째, 부담금 부과요건의 구체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보면⁸⁾,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담금 징수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요율의 경우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그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구체성 및 명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셋째,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징수된 디지털복지기금 부담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 디지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어느 정도 충족하는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것으로 보임.

다만, 부담금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2005년부터 시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⁹⁾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료(구독료 등)를 지원하는 등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부담금 신설 및 디지털복지기금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 목적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완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규모 : 2024년 1인당 13만원, 총 258만명 대상
- 예산액 : 2024년 예산 약 3,943억원(국비 2,937억원, 지방비 1,006억원)
- 주요내용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다수의 온/오프라인 사용처 포괄
 - * 온라인분야 사용처
(OTT) 티빙, 웨이브, 왓챠, 네이버시리즈ON 등
(음원) 멜론, 지니뮤직, 벅스, 플로 등
(도서) 네이버 도서, 웹툰 및 웹소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카카오페이지 등

넷째,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서비스 지원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별표 35호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¹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의 사용용도 중 일부

9) 문화예술향유지원 세부사업(1765-301)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유사한 측면¹¹⁾¹²⁾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¹³⁾ 동 사안의 경우 조세보다는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여섯째, 부담금 존속기한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면¹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지원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 만큼,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으로 ① 부담금 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집단적 동질성), ② 부담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2)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3132-308)"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1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451

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객관적 근접성), ③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집단적 책임성),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집단적 효용성)¹⁵⁾을 제시하고 있음¹⁶⁾.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볼 때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국가 기반인 전기통신망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고(특허적 성격의 사업권) 이를 사업에 활용하며, 현재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에 따라 요금감면 의무 등을 부여받고 있는 것과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단순히 활용하여 콘텐츠제작·유통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사업자로 공적 자원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지위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요금감면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그 성격과 공적 책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만큼,

부과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 전체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은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및 집단적 책임성의 요건을 충족

15)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므로, 과제의 수행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과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 여부 등은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음(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16)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결정,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¹⁷⁾¹⁸⁾¹⁹⁾

한편, 본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2호)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 17)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024년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후속 조치로서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부담금 정비를 추진 중인 만큼 부담금의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에 대해 부담금 부과 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부과요건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요금감면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금을 운영할 경우 큰 규모의 재원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재원 부담주체와 부담기준·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19)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다수의 제작·유통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콘텐츠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다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공적책무를 부담할 반대급부(독점적·배타적 지위 등)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콘텐츠·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u>97.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디지털복지기금 분담금</u>

문의처
02)6788-5153

